【아동학대 예방 안내】

1. 아동학대의 징후(예측 단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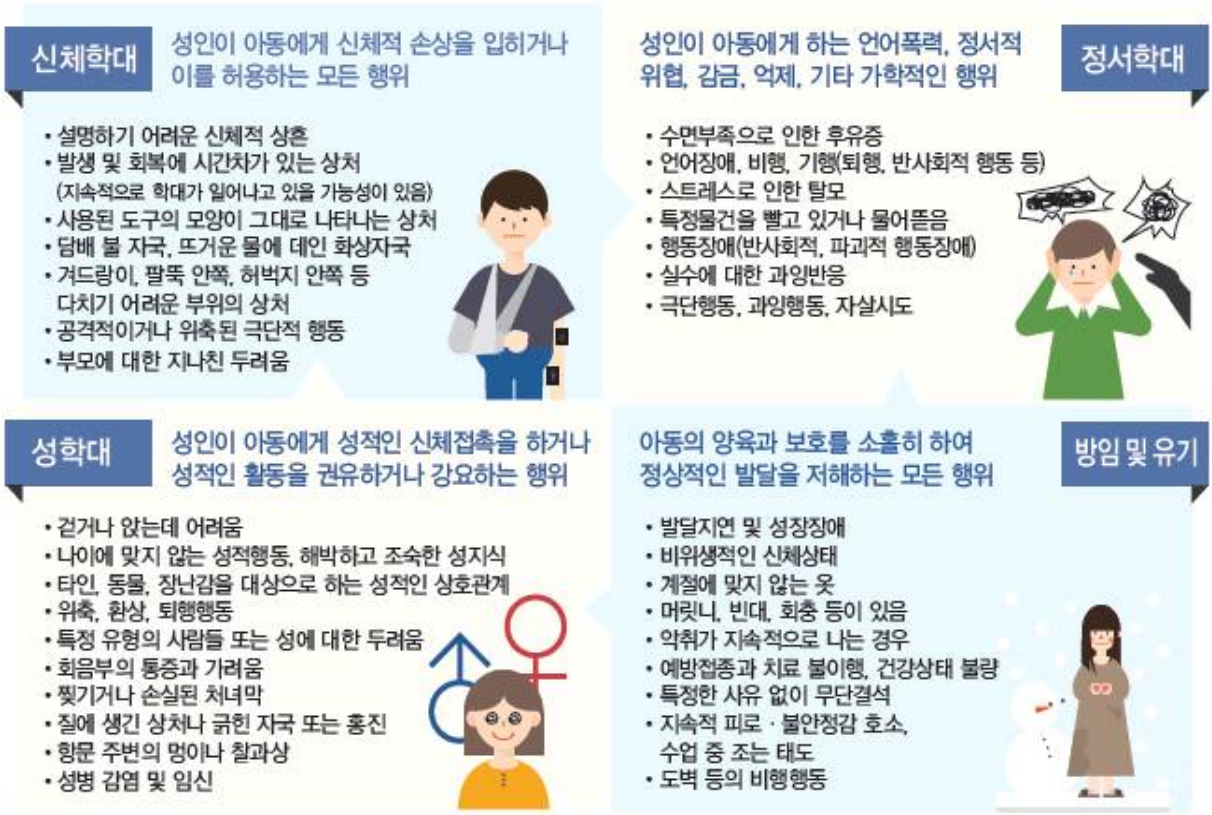

2.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신고(112번으로 신고)

-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(아동복지법 제26조)
- 신고 후 피해자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필요하 따라 관련 상담·보호시설·의료·법률 서비스를 연계해드릴 수 있습니다.
-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므로 아동학대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)

신고자 보호조치 내용

• 아동학대처벌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,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, 동시에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2021년 4월 26일

혜천유치원장

【아이지킴이콜 112앱】

아이지킴콜 앱 소개
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,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입니다.

-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담겨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-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
  '아이지킴콜' 또는 **'아동학대'**를 검색해보세요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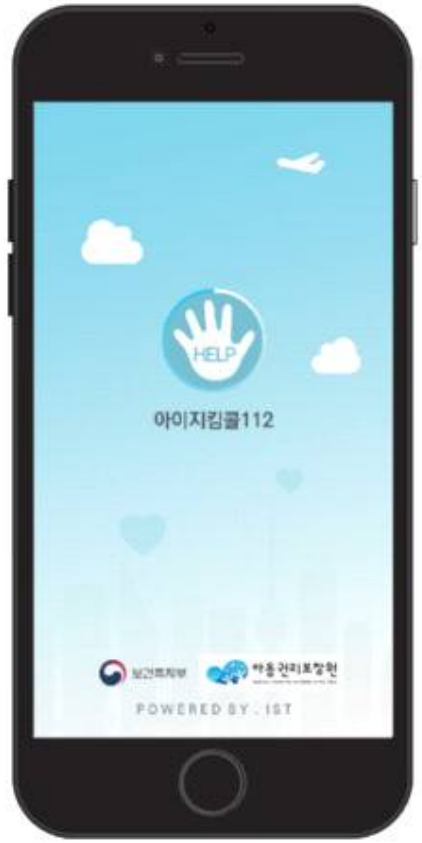
Google Google play Apple